

인천지방법원 2022. 5. 4 선고 2021가단2336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임영준

변 론 종 결 2022. 4. 13.

판 결 선 고 2022. 5. 4.

주 문

1. 인천 강화군 E 대 489㎡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F(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0. 10. 5.1)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F에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0. 10. 7. 접수 제301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F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457060호로 임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F은 원고에게 1,51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8. 11. 21. 확정되었다.

(2) F의 부친인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 H와 자녀들인 F 및 피고들이 존재하였다(이하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을 일괄하여 ‘상속인들’이라 한다).

(3) 상속인들은 2020. 10. 5. 망인의 상속재산인 인천 강화군 E 대 4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를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기하여 2020.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F은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F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인 2/11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F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2012. 1. 22. 이루어졌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5년의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분할협의를 2020. 10. 5.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피고들이 F의 국세체납액 54,631,300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실질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F의 지분을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바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은, 망인의 적극재산인 63,353,100원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 1억 1,000만 원을 합한 173,353,100원에서 망인의 소극재산 2,300만 원을 공제한 150,353,100원 중 F의 상속지분비율인 2/11에 해당하는 법정상속분 27,336,927원에서 F의 특별수익 1억 1,000만 원을 공제하면 F의 구체적 상속분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며,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의 구체적 상속분이 피고들 주장과 같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진수

1) 청구취지에는 2020. 10. 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 이는 2020. 10. 5.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